

<의안번호 제2006 - 60호>

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6. 11. 8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6. 11. 9

2. 제정이유

-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내 대학교에 발전연구소를 설치하여 관·학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.
- 거창전문대학의 발전은 우리군의 교육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유동인구를 유입하는 큰 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상호 상생발전을 이루는 협력체계가 필요함.
- 지역실정에 밝은 거창전문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고, 국내 우수기관과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연구소를 설치하여 거창을 발전시키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적·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함(안 제1조)

- 나.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와 정책개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연구소의 주요업무를 정함(안 제4조).
- 다.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거창군과 거창전문대학간 공동으로 부담하고 거창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연구소 운영의 기본방침, 운영규정, 예산 및 기타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함(안 제6조).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('06. 10. 11 ~ 10. 31) : 의견제출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종합적이고 투자적인 발전계획을 연구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, 군정전반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토록 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- 동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입안·심사기준인 제정입법의 필요성 여부와 주요내용별 세부적 사항을 살펴본 결과
 -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
- 동 조례안의 제5조(출연금) 제1항에서 '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거창군과 거창전문대학 간 공동으로 부담한다'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

- 공동이란 용어는 향후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므로 이의 표현을 공동
⇒ 1 : 1 또는 각 50%씩 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함이 필
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, 출연의 규모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
설명이 필요함

○ 또한 동 조례안을 제정공포 시행하기에 앞서 『거창군 미래전략연구
소』는 이미 지난 2006년 8월 7일 개소식이후 운영중에 있음에도
3개월이 지난 11월 임시회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
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.